

투자위험등급:
2 등급
[높은위험수준]

하나 UBS 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하나 UBS 월지급식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 UBS 월지급식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하나 UBS 월지급식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 [채권혼합-재간접형]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종류형, 전환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하나유비에스 자산운용 주식회사
4. 판매 회사 : 금융투자협회(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ubs-hana.com) 홈페이지 참조
5. 작성 기준일 : 2013년 5월 30일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한 날 : **2013년 6월 4일**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 조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9. 존 속 기 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kofia.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7.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전환대상 집합투자기구, 전환방법 및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본문 중 전환에 관한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이 집합투자기구가 지급하는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으로부터 우선 분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익금이 분배금보다 적을 경우 투자원본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100%까지 잠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품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이 집합투자기구는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월 분배금에서 매월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월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에 한번 분배금을 지급하여 1년에 한번 과세이익이 산정되어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일반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과세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 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신탁재산의 90% 이상을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모투자신탁 투자하고, 잔여 신탁재산 중 10% 이하로 유동성자산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재간접형)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운용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투자 대상	투자 비율
하나 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90% 이상

※단, 위의 모투자신탁 외의 다른 모투자신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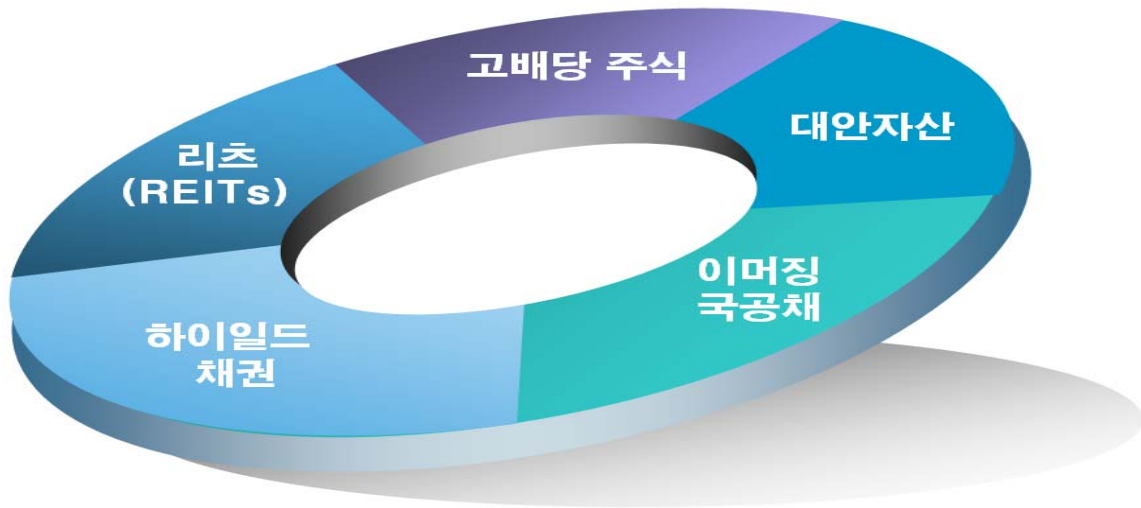
2) 유동성자산(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자산총액의 10%이하

※단,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하나 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주요투자대상	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50% 이상 투자
	주요투자전략	안정적인 인컴(이자, 배당, 자본이득)이 기대되는 다양한 자산 및 지역에 분산투자하여 수익을 추구

(1) 안정적인 인컴(이자, 배당, 자본이득)이 기대되는 다양한 자산 및 지역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



* 상기 투자자산은 투자 가능 자산에 대한 예시이며, 투자비중은 시장상황 및 운용역의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2) 투자자산군 투자 비중 조절 → 하위 투자자산의 비중 조정 → 리밸런싱(포트폴리오 재조정) 및 위험관리의 순으로 자산배분 프로세스 운용 및 관리

1. 투자자산군 비중 조절

- Top-down Approach를 통한 유망 인컴 자산군 선별
- UBS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장 및 자산군별 트렌드 파악
- 최종적으로 채권, 주식, 대안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 조절

2. 하위 투자자산의 비중 조정

- 채권: 이머징 국공채 및 하이일드 채권이 주요 하위 투자자산 (시장 상황에 따라 글로벌 회사채 편입 가능)
- 주식: 글로벌, 아시아 고배당주가 주요 하위 투자자산
- 대안자산: 리츠와 인프라가 주요 하위 투자자산 (인플레이션 헤지 차원에서 일부 금에 투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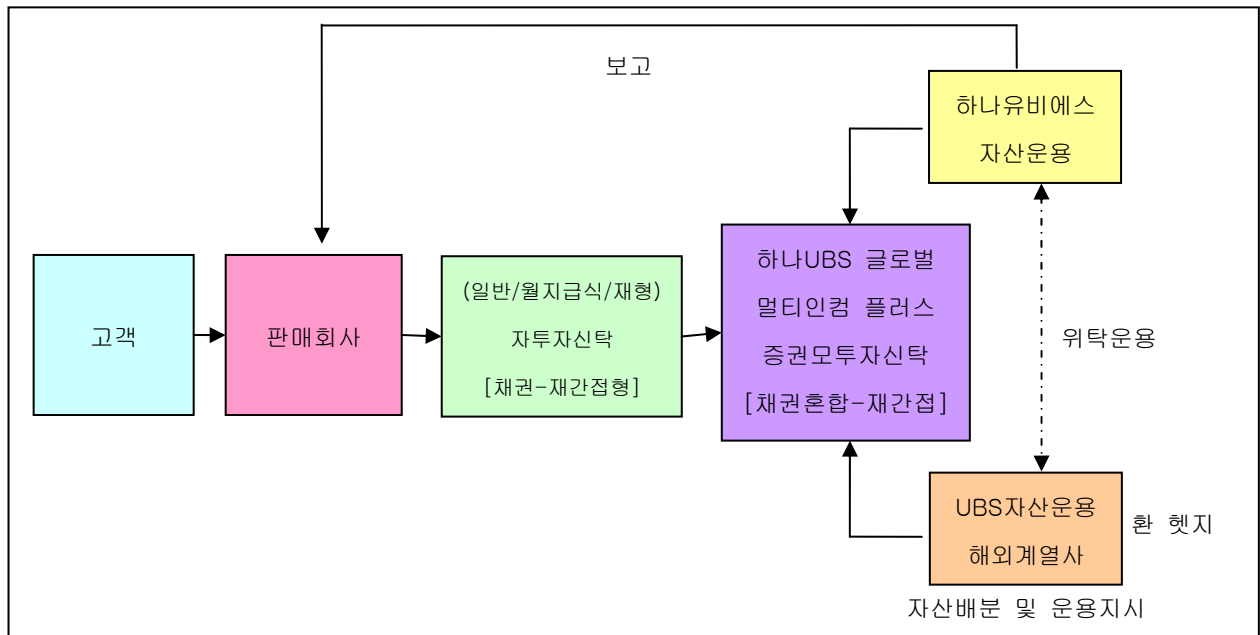
3. 리밸런싱 및 위험관리

- 월간 단위 리밸런싱(포트폴리오 재조정) 원칙 [주요 이벤트 발생시 변경 가능]
- 기타 위험관리 및 시장대응은 일간 체크
- 리스크관리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 Top-down Approach: 하향식 접근방식, 개별종목 보다는 전체적인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자산배분결정이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거시적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어떤 종류의 산업, 국가의 종목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여 자산을 배분하는 방법.

(3)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위탁운용업무

모투자신탁의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업무는 업무위탁계약에 의거 2013년 6월 4일부터 UBS Global Asset Management (HK) Ltd, UBS Global Asset Management (Singapore) Ltd, UBS Global Asset Management (UK) Ltd, UBS Global Asset Management (Americas) Inc.가 담당하게 되며, 위탁 운용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비교지수 : [JP Morgan EMBI Global Index 30%] + [BofA Merrill Lynch US High Yield Cash Pay Constrained Index 30%] + [MSCI World High Dividend Yield Index 30%] + [Call 10%]

JP Morgan EMBI Global Index

JPM EMBIG 인덱스는 JP Morgan 에서 발표하는 이머징마켓의 채권성적을 측정하는 지수로, 미달러로 표시되는 지수입니다.

BofA Merrill Lynch US High Yield Cash Pay Constrained Index

BofA Merrill Lynch US High Yield Cash Pay Constrained 인덱스는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에서 발표하는 미달러 하이일드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수로, 미달러로 표시되는 지수입니다.

MSCI World High Dividend Yield Index (USD, Net Total Return)

MSCI World High Dividend Yield Index (USD, Net Total Return) 인덱스는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고배당 주식들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수로, 미달러로 표시되는 지수입니다.

주1) 이 집합투자기구의 비교지수는 [JP Morgan EMBI Global Index 30%] + [BofA Merrill Lynch US High Yield Cash Pay Constrained Index 30%] + [MSCI World High Dividend Yield Index 30%] + [Call 10%] 입니다. 그러나 시장상황 및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당사가 해외 채권 및 주식, 리츠, 인프라, 금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자산배분 투자를 하게 되므로 비교지수와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5) 위험관리

본 자투자신탁에서는 기본적으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3. 주요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집합투자재산을 채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피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재간접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형 투자신탁이므로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 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해외 자산에의 투자는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 간의 환율변동에 노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헷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roll over, NAV 변동, 선물/선도환 시장 변화, 목표비율과 실제비율과의 차이, 환헷지 시행 수준으로 인한 환율 변동 관련위험은 남아있습니다. 본 투자신탁은 이 투자신탁은 해외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입니다. 그리고 환위험을 헷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USD, EUR)에 대하여 주로 환위험을 헷지할 계획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환율변동위험이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인 사건 및 투자대상 국가 및 투자대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유통국가의 경제적인 제반 사건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하나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손익과 연동되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해당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청산시 본 투자신탁 또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 국가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해당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해외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거나 위험자산에의 투자비중이 낮은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으므로 5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투자신탁은 해외채권, 해외고배당주식 및 기타 대안자산의 변화와 투자대상 국가 및 기업의 경제변수에 따른 가격변동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본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UBS자산운용(주)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5. 운용전문인력(2013.5.30 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안지영	1977	차장	19 개	1,685 억	-연세대 영어영문학/불어불문학 -KAIST 금융 MBA -한국씨티은행 WM 본부 투자상품부 -KB 자산운용 글로벌운용팀 -(현)하나 UBS 자산운용 상품개발 및 운용 -유관경력 6.5 년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 2) 기준일 현재 동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없습니다.

6. 투자실적추이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기준)

신규펀드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C 및 C-F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이내 ^㉞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환매수수료	- 30 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 30 일 이상 90 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30%	환매시

주)판매수수료는 판매회사가 납입금액의 1.0%이내에서 수수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수수료율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될 예정입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종류A	종류C	종류 C-F	
집합투자업자보수	0.500%	0.500%	0.500%	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500%	1.000%	0.030%	
신탁업자보수	0.050%	0.050%	0.050%	
일반사무관리보수	0.022%	0.022%	0.022%	
기타비용 ^{주1)}	실비	실비	실비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주2)}	1.072%	1.572%	0.602%	
총보수 및 비용 (합성 총보수 비용) ^{주3)}	-	-	-	
증권거래비용 ^{주4)}	-	-	-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을 말합니다.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합성 총보수 및 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징구하는 보수를 합산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이는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 수준을 대략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실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금액에 따른 Share Class와 Rebate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증권거래비용은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단위: 원)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 A	208,752	442,842	700,925	1,467,875
종류 C	161,109	507,896	890,228	2,026,409
종류 C-F	61,697	194,499	340,914	776,017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

가.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양 국가 간에 이중과세조정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수익자인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당해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 산정

구분	내용
----	----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 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나. 매입 및 환매절차

(1)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T일	T+2일	
자금납입일	집합투자증권 매입일	
(매입청구일)	(기준가적용일)	

2) 오후 5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T일	T+1일	T+3일
자금납입일		집합투자증권 매입일
	(매입청구일)	(기준가적용일)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합니다.

(2)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 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1) **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T일		T+4일	T+8일
환매청구일		기준가적용일	환매대금지급일

2) **오후 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6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10 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T일		T+5일	T+9일
환매청구일		기준가적용일	환매대금지급일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전환절차 및 방법

가. 수익증권의 전환

- (1)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전부 또는 일부 수익증권을 전환대상 투자신탁 간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의 사정에 따라 전환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판매사와의 상의를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 (2) 전환대상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을 말합니다.
 - 1) 하나 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2) 하나 UBS 월지급식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3) 수익자가 전환대상 투자신탁 간에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 전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 (4)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서 다른 전환대상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5) 수익자가 다른 전환대상 투자신탁에서 이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는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투자신탁 전환시 및 전환후 수익자가 추가로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나. 수익증권의 전환방법 및 절차

수익자가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5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6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9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10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월분배**



이 집합투자기구는 안정적인 월분배를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투자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1. 월분배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2. 아래에서 서술하는 바와 같이 어떤 경우에는 월분배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월분배금은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배금 지급으로 인하여 투자원금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4.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월분배금이 반드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표기준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기준가격과 함께 과표기준가격이 상승되는 경우에는 과세효과로 인하여 실제로 최종투자자가 받는 월분배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월 분배금에서 매월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월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에 한번 분배금을 지급하여 1년에 한번 과세이익이 산정되어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일반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과세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1) 월분배

집합투자업자는 ‘가. 이익배분’과는 별도로 매 1개월 단위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현금(이하 “분배금”이라 합니다)으로 분배합니다. 이 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으며, 분배금 지급으로 인하여 투자원금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배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어떤 경우에는 월 분배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분배금

모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증권이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인컴수익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투자신탁은 일반적으로 모투자신탁의 피집합투자증권이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인컴수익에서 발생하는 총 투자이익의 상당액을 분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분배금 지급을 유지하기 위하여 투자원본에서 분배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원본에 대한 영향(부정적 또는 긍정적 영향 모두 포함)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원본에서 분배합니다. 즉,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증권이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인컴수익에서 발생하는 총 투자이익, 손실현 자본이익 및 투자원본의 일부를 분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분배금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모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증권이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인컴수익, 당시 경제상황 및 자본금에 대한 장기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안정적인 월분배금을 분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매월 결정됩니다.

2) 분배기준일

투자신탁 설정 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배기준일은 설정일 익월의 20일로하며, 그 이후에는 매월 20일로 합니다. 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전영업일로 합니다.

월분배금 지급 기준일에 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 직후에 수익증권의 환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매대금이 지급되고 난 이후에 월분배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분배금지급일

분배기준일(당일포함)로부터 **제 5 영업일**에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2) 월분배금의 지급 연기

분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분배금 지급일에 분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분배금 미지급 사유 및 향후 처리계획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증권 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분배금에 총당할 현금마련이 곤란한 경우
2.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어 분배금에 총당할 현금마련이 곤란한 경우
3. 천재·지변 및 증권시장 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어 분배금에 총당할 현금마련이 곤란한 경우

III. 요약 재무정보

신규펀드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